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김도읍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390 발의연월일: 2024. 7. 4.

발 의 자:김도읍・이헌승・구자근

서지영 · 곽규택 · 백종헌

박성훈 · 김희정 · 김미애

정성국 · 조경태 · 조승환

전재수 • 박수영 • 정동만

김대식 • 주진우 • 정연욱

이성권 의원(19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「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」은 신공항건설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기본계획 고시 후 토지등의 수용·사용권을 부여하고 있는바, 토지등을 수용·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과의 정합성을 위해 관련 규정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에 신공항건설사업을 추가함 (안 별표 제2호(95) 신설).

법률 제 호
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제2호에 (95)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(95) 「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」에 따른 신공항건설사업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